

2024년 디지털 품질관리지원 [컨설팅, 테스트] 모집 공고

- 2024년 지역디지털품질관리역량강화사업(前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디지털 제품·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경남의 디지털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디지털 제품·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고 품질관리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지역디지털품질관리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사업목적: 기업이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테스트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제품·서비스 품질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품질관리지원을 통한 디지털 제품 경쟁력 제고 및 품질관리 비용 절감 및 지자체/기관/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디지털 품질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

2.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4. 4. 1. ~ 2024. 12. 31.
- 지원대상: 본사 소재지가 경남에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수	비고
디지털 제품·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적, 동적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컨설팅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 센터 내 구축된 상용·공개 SW테스트도구(Sparrow, DAST, LOPA 등)를 활용한 제품 테스트 지원	각 23건	직접지원
KOLAS 시험성적서(일반시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11월 30일까지 시험 진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시험에 대한 KOLAS 시험성적서(일반시험) 발급	6건	시험수수료 50% 지원

3. 디지털 제품·서비스 컨설팅 / 테스트 지원

○ 지원기간: 2024. 1. 1. ~ 12. 31.(상시 운영)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내용

- SW 개발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작성 등 품질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동적·정적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컨설팅과 결함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테스트 지원 내용

- 동남권SW품질역량센터 내부 품질관리 전담 인력 및 센터 내 구축된 상용/공개 SW 테스트 도구를 활용한 테스트 지원

○ 기업선정: 선착순 접수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테스트 진행

○ 지원대상: 본사 소재지가 경남에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또는 SW품질역량센터 경남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www.swqc.kr, www.swqc.ac.kr)

○ 지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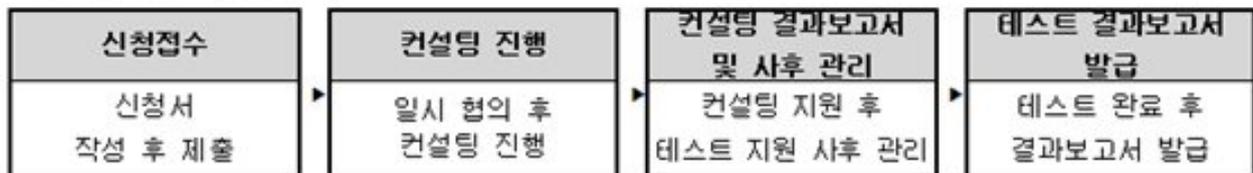
※ 사업 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성과 조사를 위해 차후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품질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 운영하는 행사 혹은 교육 등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제출	기업 지원 신청서	원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원본 1부
기타	제품 관련 컨설팅 및 테스트에 필요한 기타 자료	사본 각 1부

○ 컨설팅 지원 절차



○ 테스트 지원 절차



4. 문의 및 접수처

문의 및 접수처

- 컨설팅 및 테스트, 그 외 디지털품질관리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 문의
경남테크노파크 시데이터팀 정명영 연구원, 055-259-5028, audud6369@gntp.or.kr
- KOLAS 시험 관련 문의
경남테크노파크 시데이터팀 김민아 연구원, 055-259-5023, kma@gntp.or.k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 6. 8. , 일부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